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: 전자상거래법)



[시행 2021. 12. 30.] [법률 제17799호, 2020. 12. 29., 타법개정]

공정거래위원회 (소비자거래정책과) 044-200-4446

제27조(공개정보 검색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·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
-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·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3. 3. 21.>
- ③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법인·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23, 3, 21.>
-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 ·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3. 3. 21.> [전문개정 2012. 2. 17.]

[시행일: 2024. 3. 22.] 제27조

부칙 <제17799호,2020. 12. 29.>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

제25조제2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1>까지 생략

<62>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42조, 제43조, 제43조의2, 제44조, 제45조 및 제52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을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1조제1항 · 제2항 · 제3항 · 제6항 및 제9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3조, 제53조의2, 제54조, 제55조 및 제55조의2를"을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96조,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 8까지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62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19조"로 한다.

제45조제2항제1호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1항제1호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1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"을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2항"을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1조제2항 및 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2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66조"로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<63>부터 <82>까지 생략

제26조 생략